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899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19년 8월 7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고 시장에게 위임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별표에 규정된 표창 디자인 및 공적조서 서식을 삭제하고, 서식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 나. 그 밖에 목적조항에 있는 약칭을 다른 조문으로 이관함(안 제1조 및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5. 16. ~ 6. 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약칭(서울특별시)조문을 이동하고(안 제1조 및 안제2조), 조례에 규정된 서식(별지 제1호~제4호)을 삭제하여 디자인과 공적조서의 양식 등을 행정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및 감사장으로 분류되고, ‘표창장과 상장’은 시장과 3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 소방서장이 수여하며, ‘감사장’은 계급과 관련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음.

※ 표창 분류

구 분	수여 대상	수여 사유
표창장	①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이하 공무원 등)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
	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	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③ 개인 및 단체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
	④ 순직 공무원	공무수행 중 순직
상장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감사장	개인 및 단체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

▶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감사장 수여 현황(공무원표창) (기준 : 2019.7월 기준.)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6,751	6,495	3,061	7,212	7,447	2,536
표창장	24,551	5,912	2,795	6,654	6,887	2,303
상장	2,105	573	260	524	531	217
감사장	95	10	6	34	29	16

▶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감사장 수여 현황(시민표창) (기준 : 2019.7월 기준.)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3,660	7,960	4,530	9,155	9,155	2,860
표창장	21,979	5,217	3,110	5,894	5,882	1,876
상장	11,008	2,600	1,359	3,040	3,045	964
감사장	623	143	61	171	228	20

가. 약칭조문의 이동(안 제1조~안제2조)

-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약칭을 이동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목적조항은 조례의 근간으로 약칭 등의 사용을 통해 가독성 및 명확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표기상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여짐.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u>시</u> ----- ----- -----.
제2조(적용범위) <u>시</u> 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에서----- ----- ----- ----- -----.

※ ‘약칭’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 다만,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고,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표창장, 감사장, 상장 디자인 별표 서식 삭제(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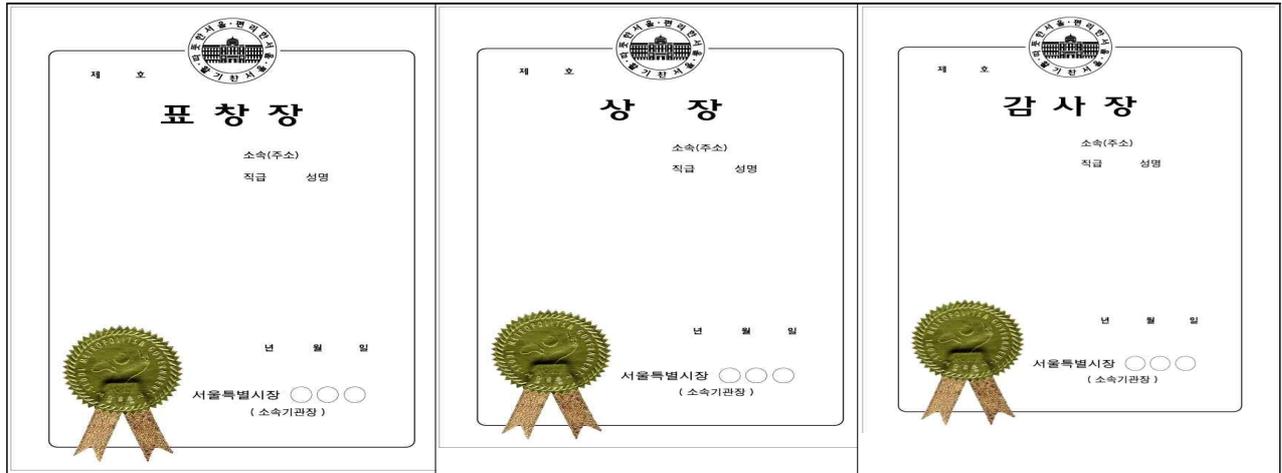
- 안 제10조 제1항은 조례의 별표로 규정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디자인 양식을 삭제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게는 각각 시장이 정하는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 표창장, 감사장 등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정시(1966.10.31.) 조례 별표에 표창 디자인을 규정함으로써 인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시정기조 및 상징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표창서식의 개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제10조 별표 서식(제1호~제3호)표창 상단 이미지에 서울시 구청사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있어 서울시정 기조 및 상징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표창장·상장·감사장 서식]



[표창 디자인 시민 등 건의 및 요청사항]

요청인	요청사항	요청일
자치구 직원	표창 상단에 적힌 문구(“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가 조례에 규정된 문구(“따뜻한 서울·편리한 서울·활기찬 서울”)와 맞지 않으므로 시정해달라는 의견	2018.5월
시장 (시장단 간담회 시)	우리시의 표창장 디자인의 심미성이 매우 낮으며 시의회 표창장 디자인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므로, 표창장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2019.1월

○ 다만, 행정국은 시정기조와 상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내부 방침으로의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표창 디자인이 자의적이고, 잦은 변경에 따른 표창 가치를 떨어뜨리는 여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구청사를 이미지화한 표창 디자인 서식이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시 구청사 표창이미지는 사료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측면과 민선시장 선출제도에 따른 표창 디자인이 자주 변경될 우려는 없는지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정부부처에서는 별표로 포상 서식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표창 디자인 선정시 서울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심벌 등의 상징물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제4조) 조례로써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표창의 서식이 시장 방침이 아닌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적권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창종류	근거규정	규정사항	별지서식
정부포상	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미규정 - 내용: 글씨모양, 표창문안 - 용지: 중량, 재질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상·하단문양, 테두리 - 내용: 글씨모양 - 용지: 중량, 재질 	
장관급 표창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크기, 상·하단문양, 테두리, 배경 - 내용: 글씨모양·크기, 표창문안 - 용지: 색상, 중량, 성분 - 증서첩: 규격, 구성, 문양 ※ 행안부에서 표준모델을 규정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운용 가능 	

다. 공적조서 별표 서식 삭제(제11조)

- 안 제11조 제1항은 표창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공적조서 작성시 조례의 별표(제4호)를 삭제하고, 이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u>별지 제</u>			
<u>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u> 를 첨	부하여야 한다.			
				----- <u>시장</u> 이 정하는 공적
				<u>조서</u> -----
				-----.

- 서울시 표창 추천에 따른 공적조서는 조례개정시(1976.12.3.) 별표에 추가한 사항으로 표창 공적과 무관한 학력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동 개정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청이 존재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됨.

(공적조서 시민 등 건의 및 요청사항)

요청인	요청사항	요청일
조00 (직소민원)	학력, 경력은 공적과 무관하고 민감한 항목 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2017.11월
익명 (자유게시판 18332번 글)	학력, 경력이 표창 수여 시 불필요하므로 삭제해달라는 의견	2018.10월

- 다만, 중앙정부의 공적조서와 달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참고자료 참조).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장 표창 공적조서 또한 서울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민들의 혼란 예방과 행정 처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동일하게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및 행정안전부(상훈법 시행령) 서식 비교)

서울시 공적조서 서식				상훈법 공적조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 적 조 서				공적조서 (호 표)			
(1) 성 명	(한자) (원명)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외(외국인인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주 소		소 속	
(5) 주 소				직 위	직급 · 계급		
(6) 직 업				추천 훈격(勳)	추 천 순 위		
(7) 소 속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조사자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직위(직급·계급)			
(15) 소 속		(15) 직 위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17) 직 급		(18) 성 명	(인)	년 월 일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관			
				(인)			
				210mm×297mm[탄산지 80g/㎡]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 경력 (호 표)			
(19) 년월일	(20) 이 려	(21) 년월일	(22) 이 려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수여일(연 월 일)			
(27) 공 적 사 항				공적 내용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